

『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증원 및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를 제고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변경(안 제3조, 제12조제1항)
-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-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 추가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의2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증대와 효율적인 심의 제고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변호사, 의사, 경찰, 아동복지 전문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,
- 현장 실무자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개별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